

제 호

방산업체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명: (생년월일:)

3. 주소:

귀 업체를 「방위사업법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귀 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